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현대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며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현대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hyundai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09년 9월 1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09년 9월 16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모집 또는 매출총액)
 7. 모집 또는 매출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판매기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www.hyundaiam.com),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제 1 부 모 집 또는 매 출 에 관 한 사 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15869)								
(종류) 클래스	A	C	C2	C3	C4	C-e	C-i	C-f	C-w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15870	15871	15872	15873	15874	15875	15876	15878	1587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조좌

이 투자신탁은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하며, 모집예정금액 및 모집기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yundai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15869)

(종류) 클래스	A	C	C2	C3	C4	C-e	C-i	C-f	C-w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15870	15871	15872	15873	15874	15875	15876	15878	1587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9.09.14	최초설정
2009.09.16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현대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대표전화 : 02-2090-05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09.09.15 현재)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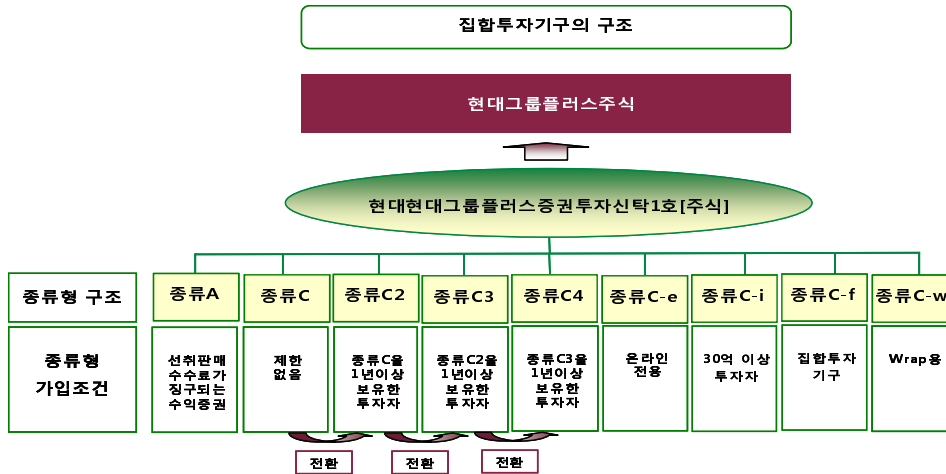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정두선	1966	수석 운용역	7	199 억	- 서강대대학원 경영학 석사 - PCA 투신운용, 와이즈자산운용 - 주식운용 16년

주)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투자신탁,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펀드코드	내용
종류A	15870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C	15871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C2	15872	종류C에 최초 가입한 투자자는 1년 단위로 C2 → C3 → C4 로 전환됨(전환일 당일 기준가격)
종류C3	15873	
종류C4	15874	
종류C-e	15875	온라인(On-Line)판매 전용 수익증권
종류C-i	15876	납입금액이 30억 이상 투자자가 가입하는 수익증권
종류C-f	15878	집합투자기구
종류C-w	15877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의 자산으로 동 펀드에 가입하는 수익증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이에 따른 기업 성장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현대그룹플러스주식”이란 다음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단, 추후 각 계열의 변동 혹은 계열내 신규 편입되는 종목(기존 혹은 신규 종목 등)은 투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룹명	해당 기업명
현대그룹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글로벌비스, HMC투자증권, 현대하이스코
현대산업개발그룹	현대산업개발, 현대EP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해상화재그룹	현대해상
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 현대H&S, 현대DSF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성우그룹	현대시멘트
한라그룹	한라건설
KCC그룹	KCC, KCC건설
기타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상사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설명
①	주식	60%이상 (단, 현대그룹플러스주식: 60% 이상)	<p>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 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 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함)(이하 "주식")</p>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이하 "현대그룹플러스주식"라 한다)</p> <p>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현대, 현대자동차, 현대산업개발,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하이닉스, 현대건설</p> <p>나. 현대해상화재그룹, 성우그룹, 한라그룹, KCC그룹, 현대상사</p>
②	채권	40% 이하	<p>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신용평가 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은 제외) (이하 "채권")</p>
③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p>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p>
④	어음	40% 이하	<p>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함. 이하 "어음")</p>
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p>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p> <p>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p>

			금리스왵 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⑥	집합투자증권등	30% 이하 단,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는 30% 까지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 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⑦	환매조건부매수	4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
⑧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
⑨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 of 대여
⑩	증권의 차입	20% 이하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
⑪	신탁업자와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⑫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에의 예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에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4) 및 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 4)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에서 열거한 ① 내지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본문만 해당)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예외	<p>다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파생상품 매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2)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 증권에의 투자	<p>이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p>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p>6)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다음 각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가) 판매수수료 : 납부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5</p> <p>나) 판매보수 : 집합투자재산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5</p>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2)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p>	
계열회사 발행증권	<p>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실권주 투자	<p>투자신탁재산으로 실권주에 투자하는 행위</p>	
후순위채 투자	<p>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한도초과	<p>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2) 집합투자업자는 (1)항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 소각
 -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2)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3)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4)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 단기대출을 제외)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1) 운용 목표

- “현대그룹플러스” 기업 주식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2) 운용 전략

-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투자대상 종목의 매출 및 수익성장 등 감안하여 편입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
 - 포트폴리오 구성시 고려사항
 - *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수요와 환율변동 등)에 따른 수혜 여부
 - * 신규사업(현대중공업 풍력산업, KCC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 등)의 경쟁력
 - * 국내외 생산능력 확충 및 신제품 출시
 - * 수요 및 경기 진작정책 등 정책적 효과(자동차, 건설 등)
- 초과수익 추구 전략
 - 산업간 연관성 및 기업별 Supply Chain 등을 활용, 기업간 Gearing 효과 분석에 근거한 투자비중 조정(철강, 화학, 전자재 등 소재산업 및 운송산업 등)
 - 수요 및 경기 진작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경기 동/후행 내수관련 종목군(금융, 유통, 건설 등)의 국면별 활용이 반영된 포트폴리오 조정
- 위험 관리 전략
 - 주가지수선물 매도헤지 또는 주식 투자비중 조절로 시장위험 관리
 - 전후방 산업간 연관성이 높은 현대그룹플러스 관련주의 특성상 구조적 수요위축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산업의 비중 축소

(3) 현대그룹플러스 기업의 주요내용

계열명	해당기업명	내용
현대계열	현대엘리베이터	- 국내1위 승강기전문업체, 세계 TOP 5위 목표(시장점유율10% → 15%)
	현대상선	- 국내 최대 탱커사업부문 영위, 다양한 운영선종 보유
	현대증권	- Retail 에 강점을 보유한 종합증권사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현대자동차계열	현대자동차(기아차)	-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재편, 미국과 중국시장 점유율 확대로 글로벌 선두업체로 도약
	현대모비스	- 현대차/기아차의 글로벌 성장과 함께 지난 9년간 영업이익이 지속성장, 자동차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성장기대
	현대제철	- 10년 본격적인 고로가동으로 매출성장 및 시장지배력 확대로 기업가치 Level-up
	글로벌비스	- 현대차그룹의 3대 물류사업확보(CKD, 완성차운송, 현대제철 원료운반 사업)로 고속성장을 보장
	현대하이스코	- 현대차그룹내 자동차용 냉연강판 공급업체
	B&G 스틸	-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업체로 조선, 자동차, 건설 등에 사용되는 스테인레스강판 공급업체
	HMC 투자증권	- 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IB 분야 신규 진출
현대산업개발계열	현대산업개발	- 국내 주택자체사업에 주력하며 업계 최고의 주택사업 경쟁력 확보
	현대 EP	- 현대차, 기아차 등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용 기능성 소재 공급업체
현대중공업계열	현대중공업	- 글로벌 1위 조선소로서 전선종에 걸쳐 경쟁력 확보
	현대미포조선	- PC 선 건조 선두업체로서 업계 최고의 수익성 보유
현대해상화재	현대해상	- 자동차보험의 장점을 바탕으로 경쟁우위 확보
현대백화점계열	현대백화점	- 프리미엄급 백화점으로 신규점 출점 통한 성장기대
	현대 H&S	- 우수한 자산가치 보유한 대표적 가치주
	현대 DSF	- 울산지역의 안정적 소비 기반으로 꾸준한 실적기대
성우계열	현대시멘트	- 시멘트 제조 회사로 리조트 등 레저사업 진출
한라계열	한라건설	- 토목중심의 안정된 영업성과 자산가치 강점
KCC 계열	KCC	- 건자재 국내 1위 시장지배력, 높은 투자자산 가치
	KCC 건설	- 그룹, 관급수주 중심의 안정적 성장성 확보
기타	현대건설	- 공공부문 1위, 토목, 플랜트 분야 최고 경쟁력 확보
	하이닉스	- DRAM 부문 생산 및 기술부문 선도업체
	한라공조	- 자동차 공조분야 국내 1위
	현대상사	- 종합상사업체로 자원개발 및 조선업 자회사 보유

※ 비교지수 : [(KOSPI × 90%) + (CD 금리 × 10%)]

주) 이 투자신탁은 현대그룹플러스와 관련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일반 주식 시장과 상이한 수익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펀드입니다. 이에 따라 KOSPI 를 이 투자신탁의 시장 대비 성과 참고를 위한 단순 참조지수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본부와의 연계 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M/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모니터링 및 체계적 펀드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시장의 변동 및 주가 등락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적격등급(A-)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래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현대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한정된 투자대상, 산업섹터, 업종 또는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 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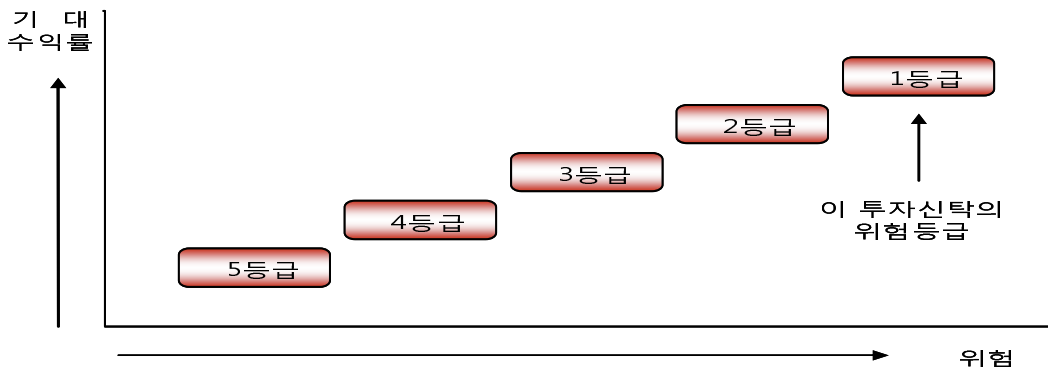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실무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타위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특정 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향후 주식시장의 전망을 좋게 보고, 동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높은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현대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편입비율이 약관상 6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를 초과하는 파생상품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투기등급채권(BB+이하), 후순위채권의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고수익고위험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주식편입비율이 약관상 30%초과 60%미만인 집합투자기구 -주식시장 전체를 추적대상으로 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미만인 파생상품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투기등급채권(BB+이하), 후순위채권의 투자비율이 3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주식편입비율이 약관상 30%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원금보존 추구형 또는 장내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BBB+ 이하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우량등급(A-이상)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MMF 집합투자기구

주1)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등은 주된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투자구조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합니다

주2) 최대손실가능비율이란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가능비율을 말합니다. 다만 신용위험 및 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실제손실이 최대손실가능비율보다 클 수 있습니다.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주3) 모자형 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및 편입비율 등을 기초로 분류합니다.
- 주4)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분류합니다.
- 주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외환위험에 노출된 정도와 투자국가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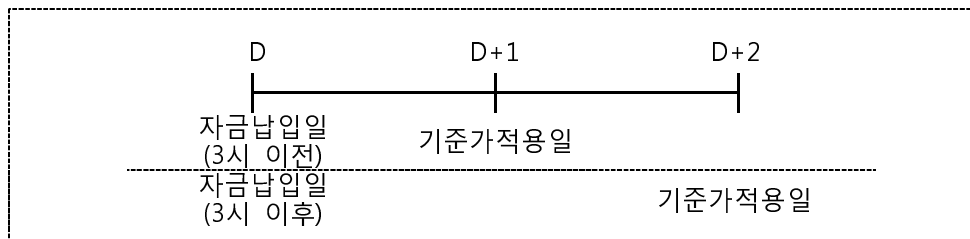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A 수익증권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종류 C 수익증권 :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종류 C2 수익증권 : 종류C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수익자가 전환되어 보유하는 수익증권
- 종류 C3 수익증권 : 종류C2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수익자가 전환되어 보유하는 수익증권
- 종류 C4 수익증권 : 종류C3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수익자가 전환되어 보유하는 수익증권
- 종류 C-e 수익증권 :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 종류 C-i 수익증권 : 납입금액이 30억 이상 투자자가 가입하는 수익증권
- 종류 C-f 수익증권 : 집합투자기구
- 종류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좌용 수익증권

* 가입제한 :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중 현대그룹에 소속된 계열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2)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3)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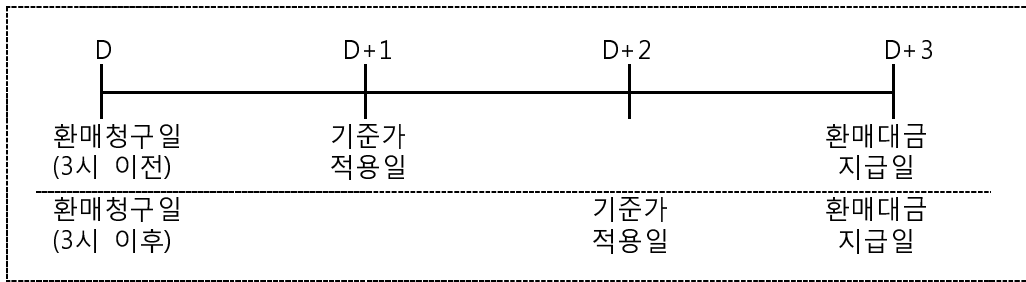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2)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 류	A	C	C2	C3	C4	C-e	C-i	C-f	C-w	
환매수수료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주)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천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종류C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신탁계약서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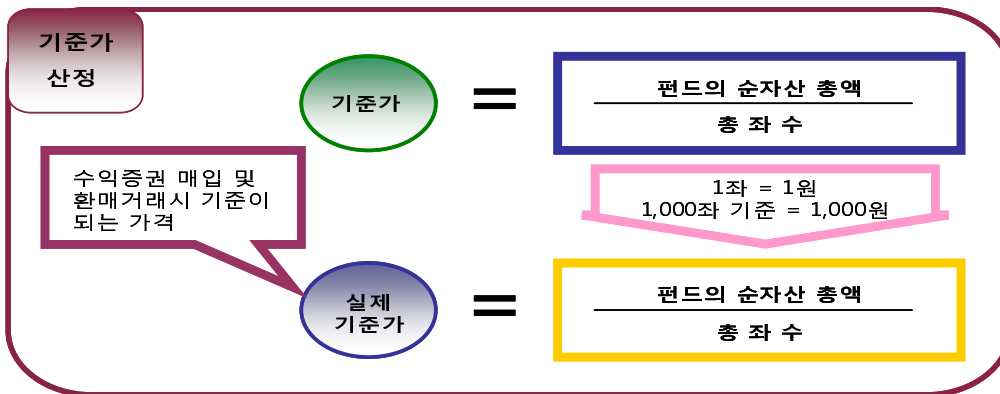
- 상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http://www.hyundaiam.com)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판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해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최종시가 없는 상장채권을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 수수료
A	가입제한 없음	납입금액의 1% 이내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C	가입제한 없음	-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C2	종류C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C3	종류C2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C4	종류C3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C-e	온라인 전용	-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C-i	납입금액 30억이상 투자자용	-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C-f	집합투자기구	-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C-w	판매회사의 Wrap 계좌용	-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부과기준		매입시	-	환매시	-
------	--	-----	---	-----	---

주1)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주2) 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자가 최초 매입하는 종류A 수익증권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종류A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는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수수료 적용 1일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차등 적용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 · 비용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 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거래 비용
A	0.67	0.78	0.03	0.02	-	1.50	1.50	-
C	0.67	1.54	0.03	0.02	-	2.26	2.26	-
C2	0.67	1.384	0.03	0.02	-	2.104	2.104	-
C3	0.67	1.244	0.03	0.02	-	1.964	1.964	-
C4	0.67	1.118	0.03	0.02	-	1.838	1.838	-
C-e	0.67	1.32	0.03	0.02	-	2.04	2.04	-
C-i	0.67	0.50	0.03	0.02	-	1.22	1.22	-
C-f	0.67	0.05	0.03	0.02	-	0.77	0.77	-
C-w	0.67	0.00	0.03	0.02	-	0.72	0.72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종류 A	258	597	970	2,081
종류 C	237	748	1,311	2,985
종류 C-e	214	675	1,184	2,694
종류 C-i	128	404	708	1,611
종류 C-f	81	255	447	1,017
종류 C-w	76	238	418	951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종류A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1.0%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으며,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실제 판매수수료율 수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별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6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 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零)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비과세소득)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증권거래세 면제 경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것
- 수익자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 30인(수익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수익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단, 모자형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모든 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모투자신탁의 수익자로 봄.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 및 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환차익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이 평가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손실이 더 큰 경우(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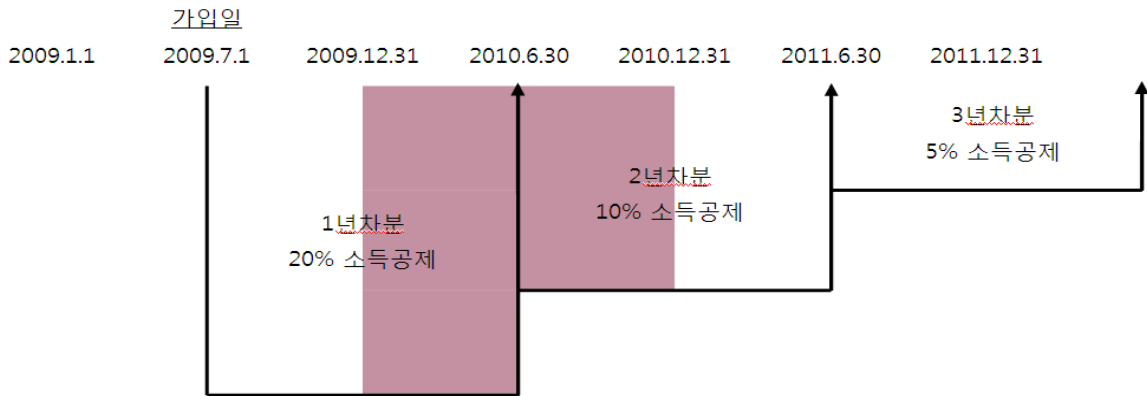
(4) 장기적립식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요건 : 2009.12.31 까지의 가입자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향후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의 적립식 투자를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하며 개인에 한함)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단,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는 제외)
 -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 기존 적립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까지의 기간 중 향후 3년 이상 추가로 적립하기로 약정한 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신규가입자: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 4) 소득공제 비율
 -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 5) 소득공제 사례
 -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 본문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세제혜택 등 과세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 정보

이 투자신탁은 신규로 신고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재무 및 운용실적을 산출한 바가 없으며, 향후 산출될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될 계획이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요약 재무정보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차대조표 :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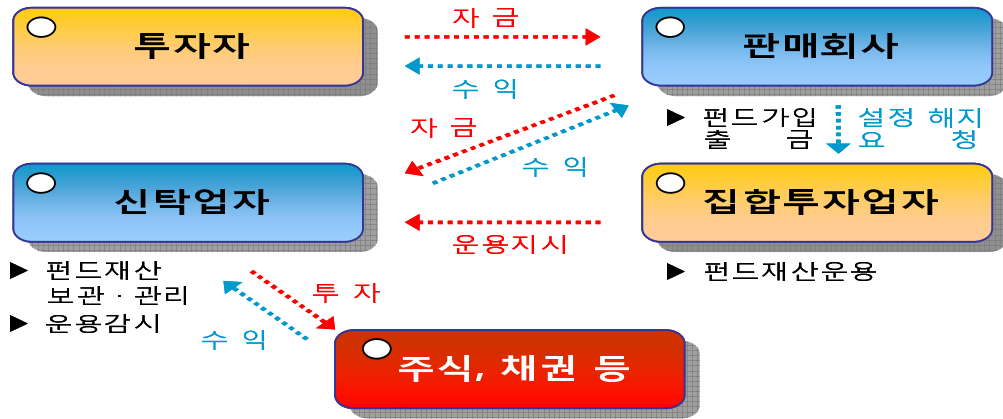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현대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층 (연락처 : 02-2090-0500, www.hyundaiam.com)
회사 연혁	2008. 11. 24 현대펀드주식회사 법인 설립 2009. 06. 17 집합투자업 등록 2009. 06. 17 현대펀드(주)에서 현대자산운용(주)로 상호변경 2009. 07. 30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등록
자본금	300억
주요주주 현황	현대증권 100%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2) 선관 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억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09.3.31	'08.3.31	항 목	'09.3.31	'08.3.31
고정자산	8		영업수익	4	
유동자산	279		영업비용	18	
자산총계	288		영업이익	-13	
고정부채	-		영업외수익	-	
유동부채	2		영업외비용	-	
부채총계	2		경상이익	-13	
자본금	300		특별손익	-	
이익잉여금	-13		세전순이익	-13	
자본조정	-		당기순이익	-13	
자본총계	286				

라. 운용자산 규모(2009.09.15 현재 / 억원)

구분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형					
수탁고	289	761	1,147	800	1,345	-	-	7,732	12,07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 개요

회 사 명	(주)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02-2131-60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1959.12설립 (http://www.hanabank.co.kr)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신탁업자는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 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 개요

회 사 명	(주)신한아이타스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우.150-969) ☎ 02) 2168-05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2000.06 회사 설립 2008.0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www.shinhanaitas.com)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 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 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pricing.co.kr	www.bond.co.kr

(2)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 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 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에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에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에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에의 소유자

마. 재판 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2)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 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로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 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hyundaiam.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 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 거래	1)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편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2) 선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중개회사 평가를 통해 중개회사와 중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 - 운용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음 -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름 -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 -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음.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음 <p>3)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함 -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함 -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됨
<p>장내파생상품 거래</p>	<p><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p>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펀드 기준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펀드 운용성과의 척도로 사용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증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대한 최저투자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모펀드 수익증권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펀드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가입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환매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환매수수료는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수익자들이 모여 의사결정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투자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금리스왑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 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판매직원 성명: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 :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